

-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불합리에 따른
청원(거의1동) -

의견서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2. 구미시 거의1동 지역은 1990년대 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으나, 금번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에는 주거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, 도시계획 입안의 주체인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처리토록 의결하였다.

다 음

- 도시계획결정은 장래 구미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,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서,
- 지역의 균형발전과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·검토하여야 할 것임.
- 따라서, 거의1동의 경우에는 인근의 4공단과 금오공대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,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.

2002 . 10 . .

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